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타 법률에 의한 기금 수행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25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타 법률에 의한 기금 수행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왕진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8. 12.
3. 회 부 일 : 2024.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받는 정부의 출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후대응보증사업’을 통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출연하여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그런데 ‘기후대응보증사업’은 2022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편성되었고,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법률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의 경우 정부 출연금의 예산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이 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2항 단서 및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왕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타 법률에 의한 기금 수행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예산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2항 단서 및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생략)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 ----- <u>. 다만, 제23조제1항제7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예산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업무) ①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u>7.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정하는 업무</u>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8. ----- <u>제7호</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¹⁾은 ① 정부 출연금, ②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③ 기업 출연금, ④ 그 외의 자의 출연금을 재원(財源)으로 조성하고, 이 중 정부 출연금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하도록 규정함(법 제6조).²⁾

○ 신용보증기금은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중소·중견기업팩토링 운용, 경영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법 제23조).³⁾

□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외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소관 부처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매출채권보험계정(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기획재정부), 문화산업완성보증계정(문화체육관광부), 녹색보증계정(산업통상자원부), 녹색공정전환보증계정(기획재정부) 등 별도의 기금(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1)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본재산"이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3. 기업의 출연금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3)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 2. 신용보증 / 2의2. 보증연계투자 /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채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별도 계정 현황>

구분	근거 법률	소관 부처	내용	예산액
매출채권 보험계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 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22) 550억원 (‘23) 350억원 (‘24) -
산업기반 신용보증 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기획 재정부	사회기반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자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 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때 부 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22) 150억원 (‘23) 100억원 (‘24) 100억원
문화산업 완성보증 계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상품 제작 기업이 금융기관으 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	(‘22) 90억원 (‘23) 60억원 (‘24) 75억원
녹색보증 계정	신재생에너지법 제10조제16호	산업통상 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채무를 보증	(‘22) 225억원 (‘23) 200억원 (‘24) -
녹색공정 전환보증 계정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0조	기획 재정부	저탄소 사업구조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품 생산 등 탄소중립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금 전채무를 보증	(‘22) 450억원 (‘23) 400억원 (‘24) 340억원

(자료: 신용보증기금)

□ 그 중 “녹색공정전환보증계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 및 「기후대응
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2022년에 설치된 것으
로, 신용보증기금은 동 계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또는 친
환경 제품·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인 ‘기후대응보증’을 추
진하고 있음.⁴⁾

○ 다만,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소관)의 설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대응기금의 보증사업을 운영하기

4) 기후대응보증(신용보증기금출연) 개요는 참고자료 참조

위한 녹색공정전환보증계정의 설치 및 기후대응기금의 보증사업의 수행 근거는 법률이 아닌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제72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9조·제20조)⁵⁾.

-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2022년 450억원, 2023년 400억원, 2024년 340억원이고, 2024년 8월 말 기준 보증잔액은 1조 412억원임.

<신용보증기금 기후대응보증 지원 현황>

(단위: 억원, 배)

구분	2022년	2023년	2024.8월말
정부 출연액	450	400	340
보증잔액(A)	5,049	8,834	10,412
신규보증액	5,430	5,138	2,129
기본재산(B)	353	596	695
운용배수(A/B)	14.3	14.8	15.0

(자료: 신용보증기금)

-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12조⁶⁾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국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색공정전환보증계정은 개별 법률에 별도의 출연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9조(보증기관) 기금의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제20조(보증계정의 설치·관리 등) ① 보증기관은 기금의 보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6)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참고로, 녹색공정전환보증계정을 제외한 매출채권보험계정,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문화산업완성보증계정 등 신용보증기금의 별도 계정 또는 기금은 그 설치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근거⁷⁾를 두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 이에,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713호)의 의결을 전제로,⁸⁾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예산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 신용보증기금이 기후대응기금의 출연을 받아 추진 중인 기후대응보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引渡)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713호)은 2024년 8월 12일 발의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범위 및 각 업무 수행을 위한 정부 출연금의 재원 소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감독 및 기본재산 출연예산 편성권 구조, 다른 법률의 논의 과정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기후대응보증 사업을 위한 계정 설치 및 출연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713호)의 입법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다른 신용보증기금의 별도 계정 또는 기금의 규정 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도 다른 위탁계정은 해당 법률에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후대응보증 추진을 위한 출연의 법적 근거 마련은 「신용보증기금법」을 별도로 개정하지 않고 「탄소중립기본법」만을 개정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출연 예산 소관에 ‘다른 법령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도 포함하려는 것이나, 이는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상 관리·감독 및 기본재산 출연예산 편성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대한 정부 출연금 예산 편성권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하고, 기금의 업무와 예·결산 승인 등 관리·감독권은 금융위원회 소관⁹⁾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기금의 예산편성권과 업무감독권이 분리된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중소기업청이 설립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¹⁰⁾.
-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은 기본재산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으로 정의하고, 이 법의 목적을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신용보증기금법」 외에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는 매출채권보험계정,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문화산업완성보증계정 등은 신용보증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재산 조성 용도의 출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다른 법률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업무를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로 규정하고, 관련된 출연예산의 소관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

9) 제42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0) 신용보증기금의 관리체계 변천은 [참고자료2] 참조

로 하도록 ‘기본재산 조성’ 규정에 포함할 경우 현행법 상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예산편성권과 업무감독권이 분리되어 이원화된 체계를 보다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려는 내용, 정부 출연금 예산 편성권을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일원화하려는 내용 등 관리체계 이원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후대응보증사업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가 동 법률의 개정으로 달성되는지 여부, 현행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체계 이원화 구조를 심화시킬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및 사업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외에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도 이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4, 서왕진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법률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6

【참고자료1】 기후대응보증(신용보증기금출연) 개요

1. 보증 개요

- ☐ (개요)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지원
- ☐ (운용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재부 고시)
- ☐ (출연금) '22년 450억원, '23년 400억원, '24년 34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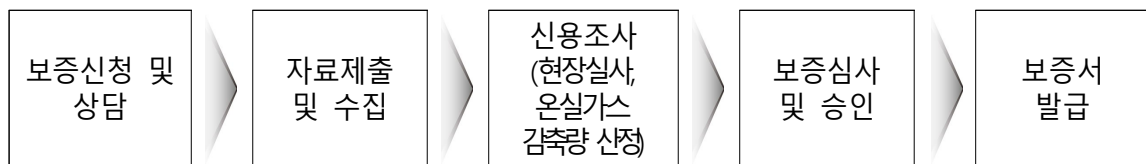
2. 주요 지원내용

- ☐ (지원규모) '22년 5,430억원, '23년 5,138억원
- ☐ (지원한도) 중소기업 100억원, 중견기업 200억원
- ☐ (지원대상) ①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또는 ②친환경 제품기술 보유 기업 등
 - ① 온실가스 감축(전기, 연료, 용수, 폐기물 등 절감) 효과를 보유한 시설 도입에 따른 시설자금
 - ②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된 친환경 제품·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품·서비스 생산 또는 제공 과정에서 전기, 용수, 폐기물, 원·재료 등의 사용을 절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운전 또는 시설 자금

< 지원대상 예시 >

- 에너지 절감형 각종 제조·생산 시설(보일러, 인버터, 가스히트펌프 등)
- 친환경 연료 사용시설(경유·B-C유·석탄 등 대신 LNG·수소 등 사용)
- 에너지절감, 이산화탄소 저감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제품 생산
- 친환경 원료(바이오매스 등)를 활용한 제품 생산업체
- 전기차·ESS(배터리)·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제품·설비의 부품 등 제조업체

- ☐ (우대방식)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차감 등
- ☐ (수행구조) 신용보증기금의 전국 영업점을 통한 보증지원



(자료: 금융위원회)

【참고자료2】 신용보증기금 관리체계 변천

- 1974.12월 신용보증기금법 제정 당시에는 예산편성권이 재정경제부 소관
 - 법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명문 규정은 없었으나, 전반적인 업무감독권을 재정경제부가 보유
- 1996.2월 중소기업청 설립으로 업무감독기능과 예산편성기능이 이원화
 - 법 개정(1996.12월)으로 예산편성권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 업무성격상 구분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청이 신설기관으로서 조기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 배려 차원
- 2003.12월 국가재정법(舊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도 2004년부터 국가재정법 적용
 -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
- '08.3월 금융위 설립으로 업무감독권이 금융위로 이관

(자료: 금융위원회)